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18. 4. 19.(목) / 총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교통안전복지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정규철, 주무관 이선명</li> <li>• ☎ (044)201-3870, 3871</li> </ul>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중형 저상버스 도입·보행 환경 조성...교통약자 이동권 확대

###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, 특별교통수단(장애인 콜택시)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(금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

□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

○ 현행 저상버스(10.5m 이상)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·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,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(7~9m)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\*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였다.

\* 안내방송, 문자안내판, 행선지표시, 휠체어 승강설비, 교통약자용 좌석 등

\*\* 현행 규정(시행령 별표1~2)은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시외버스에만 적용

- 그리고,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「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」를 개정할 예정이다.

- 참고로,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, 「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’17~’21)」에 따라 농어촌·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면 ’19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\*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(R&D) : ’13. 12.~’17. 12.

- 아울러,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,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·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.

## ②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

-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(휠체어 고정장치·탑승객 안전띠 등)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\*하였다.

\*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,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규격 등

## ③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 신설

- 최근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개정 내용\*을 반영하여,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범위,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.

\* 시장·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‘협의체’를 구성하고,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안전시설물에 ‘보행경로안내장치’ 추가

- 국토교통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,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○ 또한, “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(이용시간·대상·운행범위 등)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(18.6),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대수의 개편(19.6)과 함께,

-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·시외버스 서비스도 시범사업(19년)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\*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·시외버스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(18. 2. 22.)

□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(40일간)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 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\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,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

- 전화번호: 044-201-3871, 팩스 : 044-201-5586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정규철 사무관, 이선명 주무관(☎ 044-201-38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